

콘텐츠

(입법예고)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및 전부개정안 입법예고.....	2
(서식)검토의견서.....	4

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
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,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시행규칙」 및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
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
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10월 29일

노 원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
간 기능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력수요를 적정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
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《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》

가. 국 명칭 변경(조례 안 제3조)

- 문화도시행정국 → 문화행정국
- 기획재정국 → 기획경제국
- 주민복지국 → 복지돌봄국

- 안전교통건설국 → 안전교통국

- 힐링도시국 → 정원여가국

나. 부서 직제 변경(조례 안 제5조의2)

- 미디어홍보담당관 → 미디어홍보과

다. 부서 신설: 주거정비과(조례 안 제5조), 일자리지원과(조례 안 제6조),
스마트혁신과(조례 안 제9조)

라. 부서 통·폐합

- 어르신지원과 + 고령사회정책과 ⇒ 어르신복지과(조례 안 제7조)

- 여가도시과 + 여가생활과 ⇒ 여가관광과(조례 안 제10조)

《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》

가.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(조례 안 제2조)

- 총 계: 1,680명 → 1,704명(증 24명)

- 직급별·직렬별 정원 조정 (규칙 안 별표)

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(단체 또는 개인)는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,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(참조 : 행정지원과장, ☎2116-3088, FAX :2116-4608, email : onbam@nowo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안 및 규칙안은 노원구 자치법규정보시스템(<https://www.elis.go.kr/main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

☐ 제출기관 :

☐ 제 출 자 : (전화번호 기재)

현행규정	검 토 의 견	
	개선(안)	검토사유

「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
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서

☐ 제출기관 :

☐ 제 출 자 : (전화번호 기재)

현행규정	검 토 의 견	
	개선(안)	검토사유

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

☐ 제출기관 :

☐ 제 출 자 : (전화번호 기재)

현행규정	검 토 의 견	
	개선(안)	검토사유

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
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서

☐ 제출기관 :

☐ 제 출 자 : (전화번호 기재)

현행규정	검 토 의 견	
	개선(안)	검토사유